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53th February 2013

- ▶ WHERE IS GRACE CHANG?:
“행복두배” 2
- ▶ ABOUT WRITERS 2
- ▶ 신한만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 3
- ▶ COVER STORY:
2013년 관세청 철저한 세수 관리 및 관세
조사 확대 3
- ▶ FTA NEWS:
한-미 FTA, 섬유 및 의류분야 집중조명
..... 4
- ▶ VOICES FROM THE FIELDS:
밀수는 사람의 욕망 따라 흐른다.
..... 5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 6
- ▶ CUSTOMS PRECEDENT ㉓
..... 7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SHINHAN

Since 1965
CUSTOMS SERVICE

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

WHERE IS GRACE CHANG?

"행복 두배"



장승희
대표 관세사

수십 년 만의 추위가 닥쳐온 이 겨울도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 한 해의 마지막 절기인 대한(大寒)이었지만 지난 12 월부터의 강추위에 단련이 되어서인지 제법 무난히 버티어 내었습니다. '소한 얼음 대하에 녹는다.' '대한이 소한 집에 가서 얼어 죽었다.'는 속담을 떠올리며 옛 어른들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2013 년을 맞이하여 신한의 모토(Motto:표어)는 "행복두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한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의 표출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의 생활은 즐겁고 행복하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행복행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직원 한 사람의 행복은 그 가족의 행복에 큰 기여를 하게 되지요. 따라서 회사의 책임은 매우 큼니다.

또한, 행복한 직원은 즐겁게 일을 할 것이며 고객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을 행복하게 해드리면 회사의 성장, 매출의 신장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행복이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맛난 음식을 같이 먹으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좋은 옷을 사주면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인가요? 즐겁게 일 할 때에, 보람 있는 일을 할 때에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안다면 그것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신한 News 는 새로운 가족, 김연중 전무를 소개 드립니다. 신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강점은 더욱 키워 나갈 인재입니다. 모든 고객 여러분께 빠른 시일내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발 경제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원화 값의 가파른 상승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Cover Story 는 이러한 경제 현상에 따른 2013 년 세수의 감소 예상과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책을 정리하였습니다.

한미 FTA 에서 가장 쟁점품목중의 하나인 섬유 및 의류분야를 집중 조명한 FTA News 와 백승찬 부산지사장의 '밀수'에 대한 단상도 필독하여야 할 글입니다.

'하루 한두 가지씩 감사한 일을 공책에 적으면, 3 주 만에 뇌가 변한다.'고 합니다. 매일 감사노트를 쓰며 어제보다 1% 행복한 오늘을 만들면 3 달이 안되어 두 배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행복두배"의 2013 년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ABOUT WRITERS

COVER STORY -

2013 년 관세청 철저한 세수 관리 및 관세 조사 확대



강 승 주 관세사
(sjkang@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eam
- 원산지 관리자
- 前) LG 전자(주) HE 본부 관세그룹

FTA News-

한-미 FTA, 섬유 및 의류분야 집중조명



최 지 아 관세사
(jh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연
- FTA 통관 실무 및 비즈니스 모델

Voices From The Fields-

밀수는 사람의 욕망 따라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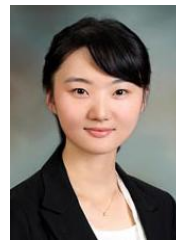
백 승 찬 관세사
(sbbaik@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부산 지사장
- 부산세관 행정서기보 공채
- 세무서기 승진(마산세관)
- 세무주사보 승진
- 관세주사 승진(경남사천세관)
- 행정사무관 승진
- 대통령상 표창

관세 법령 변경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임 보 화 관세사
(bhli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경기공항지사
- 28 기 관세사시험 수석합격
- 수출입업무 및 통관

Customs Precedent ㉓

관세평가 스터디 발표자료



신 성 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전략기획실 이사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

Cover Story

2013년 관세청 철저한 세수 관리 및 관세 조사 확대

수입 줄고 환율 하락 시 세수 부족 전망

올 해 책정된 국제 징수액 216 조 4 천억원 가운데 약 1/3 인 71 조 6 천억원의 징수 책임을 관세청이 맡고 있다. 관세청의 경우 관세·부가세·개소세 등이 부과되는 수입 물 품 의 증가여부와 함께 환율 등락이 안정 적인 세수 조달 여부를 결정짓는 키 포인트다.

문제는 정부가 2013 년 예산편성 당시 올해 수입물품의 총 금액과 평균환율을 6 천 57 억 불 및 1 천 130 원(1 달러당)으로 책정한 반면, 현실점에서 지경부와 한국은행 등은 올 한해 수입액이 5 천 455 억불에 불과하며, 평균 환율 또한 1 천 60 원으로 전망하는데 있다.

관세청이 분석한 수입·환율과 세수 관계에 따르면, 환율을 1 천 139 원으로 산정한 상황에서 수입액이 1 억불 감소할 경우 최대 130 억원이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율이 10 원 감소할 경우 예는 약 6 천억원에 달하는 세수감소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수입액 및 환율변동에 따라 관세청 내부적으로는 올 해 책정된 세수목표액 가운데 최대 7 조원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세수 확보 비상

관세청은 지난 1 월 16 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에서 세수입 조달 과정에서의 이 같은 어려움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청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또한 마련해 시행할 것임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이 올 해 책정된 세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세수입 조달 대응 방침에 따르면,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심사 정책 국장과 본부 세관별 심사 국장 등이 참석 하는 세수점검단을 발족해 세수 진도상황과 징수활동 등을 상시 점

검하는 한편, 시기별로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자 세수조달 기반확충 목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 된다.

체납관리 및 관세조사 한층 강화

관세청은 조세회피 위험이 있는 고세율 품목에 대한 신고가격 등의 변동추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FTA 를 악용한 원산지 조작 등을 집중점검하고 부정 불법 환급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관세 환급 제도 재설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액체납자가 변칙적으로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제 1 금융권에 대한 상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이어 증권사와 보험사 등 제 2 금융권에 대한 재산점검과 함께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키로 했다.

유관기관과의 체납정보 공유도 추진돼, 체납자의 부동산을 찾기 위해 행안부와 의 정보 공유와 함께 체납자의 소득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 등과도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수입 가격조작 시도가 높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및 국부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조사 <세무조사> 조직체계가 확대 강화 될 전망으로, 기업조사 효율화를 위해 가칭 첨단 심사정보센터(AAIC; Advanced AuditIntelligence Center)를 설치한 후 조사 착수 전에 대상기업의 전산 회계와 ERP 등을 사전 분석하는데 활용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강 승 주

(sjkang@customsservice.co.kr)

Shinhan News

신한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PROFILE

김연중 전무

(yjkim@customsservice.co.kr)

- 1984 년 서울세관 입사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서울세관 김포세관 등 근무
- 수입, 심사, 조사, 소송, 관세평가 등 담당
- 前 서울세관 심사 5 관실 과장
- 前 서울세관 조사 1 관실 과장
- ※국립세무대학 관세학과 제 11 대 동문회장 역임

안녕하세요.

금년 1 월 1 일부터 신한관세법인의 가족이 된 김연중입니다.

지난해 서울세관 조사 1 과장을 마지막으로 28 년 간의 공직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세계에 몸 담게 되었습니다.

제자신 누구보다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동안 관세행정에 몸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따뜻하게 신한 가족과 고객 여러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지만 우선 지면으로 대신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찾아 뵙 것을 약속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하세요.

2013. 1. 22

신한관세법인 전무 김연중 배상

한-미 FTA, 섬유 및 의류분야 집중조명

한-미 FTA 가 2012 년 3 월 15 일 발효된 이후 10 개월이 경과되었다. 협상과정 중 관심이 높았던 섬유 및 의류 관련 분야는 기존 협정문 체결시 누락되었던 일부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추가되었으며, 섬유생산기업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 상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등의 행정적 절차가 마련되었다. 이에 대한 소개는 하기와 같다.

□ 「섬유생산기업 정보 시스템 (www.koreatex.or.kr/default.asp)」 오픈 (2012.12.07)

-한-미 FTA 에서는 對 미국 수출 섬유·의류 상품 및 원료 생산기업의 원산지 확인 관련 정보를 미측에 매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섬유생산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제공을 꾀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한-미 FTA 섬유협정에 따른 ① 정부의 정보제공 의무 이행과 ② 대미 수출 섬유 제품의 우회수출 예방 및 ③ 역내 공급부족 품목 특혜관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제공대상 정보 : ① 성명(명칭)주소(소유운영 설비 소재지 포함) ② 전화번호 및 e-mail 주소 ③ 소유경영인의 성명, 국적, 직위 ④ 근로자수 및 업무 ⑤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 및 생산능력 ⑥ 보유설비 현황 ⑦ 주당 설비가동시간 ⑧ 원료 공급처 ⑨ 미국내 고객 정보

단, 미국내 수입처와 직거래하지 않는 50 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정보(설비 가동시간, 원료공급처, 미국내 수입처)를 제공 대상에서 배제하고, 최종재 생산기업에 의한 일괄제출도 가능토록 규정

-시스템 도입 효과 : 해당 시스템을 통해 대미 수출 및 생산업체는 관련 생산정보의 등록, 갱신, 이력관리 등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한-미 FTA 와 관련된 각종 무역정보, 협정이행에 따른 애로사항의 해결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향후 FTA 검증에 체계적이고도 원활한 대응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 FTA 협정문 제 4.3 조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

□ 섬유 생산기업 1 천개 사업장 등록완료 및 정보제공

-지식경제부-섬유단체-수출자 및 생산자 공동

협조 하에 구축 중인 해당정보는 대미 수출과 관련 있는 국내 섬유 및 의류 제품 생산 사업장 약 1,000 개 사가 등록 완료(2012.12.31 기준) 되었다. 또한 2013 년 1 월까지 2 천여 개 사업장 등록 완료시 일정 수준의 검증 및 보안절차를 거쳐, 2 월 우리정부를 통해 미국 정부로 제출될 예정이다.

-대미 수출을 위한 섬유제품 생산 국내기업은 모두 해당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수출기업은 생산기업이 동 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향후 원산지검증에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하겠다.

□ 여성용 자켓 및 블레이저 원산지 결정기준 추가 (HS 6104.32) 및 관세환급 소급적용¹

-기존 한-미 FTA 협상 당시 누락된 「면제 여성용 자켓 및 블레이저 (HS 6104.32)」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추가되어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기존에 부담한 관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해졌다. 해당 원산지 결정기준은 타 의류 제품과 동일하게 역내산(한국 또는 미국산) 원사 및 직물 사용과 재단(또는 편직공정) 및 봉제공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미 FTA 면제 여성용 자켓 및 블레이저 원산지 결정기준>

보도자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3.01.08)

□ HS 코드 : 6104.32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한다.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2. 보이는 안감이 제 61 류의 주 1 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

-따라서 한-미 FTA 국내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원산지 증명이 불가하여 특혜관세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간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협정 관세적용 신청서에 원산지증명 8 가지 기재사항 및 경정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통관지세관 납세심사과에 제출하면 차액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여성용 자켓 및 블레이저 (면제)



HS CODE 6104.32

- 對 한국: 기본세율 : 13%, 협정세율 : 0%
- 2012 년 교역액: 8 만 7 천 달러 (수입)
- 對 미국: 기본세율 : 14.9%, 협정세율 : 0%
- 2012 년 교역액: 16 만 2 천 달러 (수출)

모든 혜택에는 정당한 의무의 이행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미국으로 섬유 및 의류를 수출하는 생산기업은 해당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및 올바른 원산지판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수입자는 정당한 원산지 증명절차를 통해 관세혜택을 받아 향후 원산지검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지 아

(jachoi@customsservice.co.kr)

밀수는 사람의 욕망 따라 흐른다.

밀수(密輸). 왜 사람은 밀수를 할까? 답은 간단하다. 한마디로 돈과 바라는 물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돈을 벌이는 방법의 하나로 교역을 하면서 비합법적인 무역 형태인 부정무역 즉 밀수라는 방법에 손을 댈다.

그러면 대체 밀수란 것은 무엇인가?

실은 밀수는 알면 알수록 단순하지 않다. 아주 계산적이고 조직적이며, 상승성과 기동성, 시야가 넓은 국제성을 지닌다.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 다시 말하면 위험한 곳에 밀수가 있고 밀수가 있는 곳에 돈이 모인다.

사람들은 교역을 하면서 때론 비합법적인 무역에 손을 댈다.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첫째는 관세라는 것을 물지 않으려고 이 기법을 택한다.

두번째는 국내 반입금지나 규제가 심한 품목으로서 희소성과 시장성을 가지거나 또는 관세율이 대체로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밀수를 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밀수는 관세선이라는 경제 국경선을 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밀수기법은 예나 지금이나 품목이나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밀수는 사신을 갖던 사람이나 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밀수가 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목화씨가 아닌가 한다. 이 목화씨는 문익점이 원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붓 대롱 속에 목화씨를 가지고 온 것이 우리나라에 목화가 처음으로 전래가 된 것이라고 한다. 목화씨를 가지고 오려면 얼마든지 주머니나 다른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올 수도 있었을텐데 왜, 하필이면 붓 대롱 속에다 넣어 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 목화씨가 금지품목이기 때문에 붓 대롱 속에 은밀히 숨겨서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붓 대롱은 밀수품을 은닉하는 비밀 창고(줄여서 비창:秘倉)로서 활용한 셈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항이 된 부산항, 과연 이곳으로 드나들었던 밀수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산항으로 들어온 이러한 밀수품은 아무래도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일본상품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보다 기술이 한 발짝 앞서 있는 일본상품이 현 해탄을 건너 부산항 등지로 밀반입 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주로 이러한 밀수품은 선원이나 보따리상을 포함한 일부여행자에 의해서 밀반입되었다. 그러 나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서의 저가성 농산물이 나 혐오성 물품 등이 컨테이너에 내장이 되어서 밀반입되는 것도 새로운 양상의 하나다.

개항 당시의 밀수품은 생필품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성냥과 아편이었다.

그러다가 해방 후에는 양복지를 비롯 해서 비료와 담배 등이 들어왔고, 5-60년대는 나이롱지, 향료, 우산, 재봉틀, 배아링, 화장품 류, 비로도치마, 주름치마에서 심지어는 만년필도 밀수를 하였다.

그리고 70년대는 VTR, 칼라 TV, 전축, 녹음, 선박엔진 등이 80-90년대를 접어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점차 향상되어가자 밀수품도 점차적으로 생필품에서 고급 사치성 물품으로 바뀌게 된다. 보석류, 고급시계, 카메라, 밍크, 골프채, 상아, 양주, VTR 카메라 등이 밀반입되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경제 사정이 여유가 생기다보니 자연스레 고급 사치성 물품을 찾는 수요가 그 만큼 증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0년대를 접어들자 저가성 중국 농산물인 참깨와 고추, 성보조기구, 비아그라 등이 들어왔다.

그런데 재미가 있는 것은 부산항이 개항이 되고부터 120여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변함 없이 밀수로 들어오는 인기가 있는 품목이 몇 가지가 있다. 그 중 에서 눈에 띄는 품목이 황금괴와 녹용 이란 품목이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소박한 꿈으로 남아있던 아니면 강렬한 욕망으로 남아있던 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욕망-물욕과 성욕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품목이 황금괴와 녹용이 아닐까 한다. 물욕을 충족

시켜 줄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은 곧 황금의 화신으로 나타난다. 드디어 물욕은 황금 만능을 낳았고 우리는 아직도 황금괴를 쫓아가는 것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성욕은 인간이 욕망 중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다. 성욕은 건강해야만 그 기능이 더욱 왕성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 보신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오래 전부터 전통적인 강장 보신재로서는 녹용을 꼽아 왔다. 그런데 흥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녹용을 먹었다고 해서 바로 이것이 건강의 표징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한약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약효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녹용이 든 한약을 먹었다고 해서 정력이 있다고 장담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는 보다 빠르고 확실한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성기능 향상 보조약품이 잘 활용되고 있다. 바로 이게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가짜 비아그라가 컨테이너 화물 속에서 녹용과 함께 가끔 은닉되어 밀반입되는 것도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닌가 한다.

황금괴와 녹용. 이 2 품목은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이 인간의 욕망 속에 수요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품목인 모양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들 품목은 비밀리에 잠입을 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고 세관원은 이것을 잡으려고 소리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직에서 밀수범 소탕에 전념 하였던 나로서는 이제는 새로운 감회의 하나이지만...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백 승 찬
scbaik@customsservice.c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관세법 개정(2013.01.01)에 따라 체납국세 세무서장 징수요건, 납부기한 통일 및 과세가격결정방법 보완 등 관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원산지제도 운영고시 개정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1. 개정 사유

「대외무역관리규정」개정 사항 반영, 원산지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요구사항 수용

2. 주요 개정내용

□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추가 및 표시방법 변경 (별표 6)

○ 관세통계 통합분류표 개정으로 추가된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 표시방법 반영

- HS 0308 호(수생무척추동물) : 소매포장, 수족관 등에 표시
- HS 3826 호(바이오디젤) : 소매용, 포장상자·용기 등에 표시
- HS 9619 호(위생용품) : 소매포장에 표시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으로 추가된 철강류 (3개) 표시방법 반영

- HS 7208(열연강판)
 - HS 7210(평판압연제품 - 전기, 용융, 착색 아연도 금강판에 한함)
 - HS 7219(스테인리스강판)
- ⇒ 현품에 원산지 표시,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철강판재류로 두께 10mm 미만)
- 물품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표시방법 추가 및 변경
 - HS 8715(유모차) -현품(차체부분)에 원산지표시
 - HS 9506(골프채) -Head 국명, Shaft 국명, Assembled in 국명

□ 원산지 표시기준 명확화

- 포장단위 원산지표시 : 현품이나 소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한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여 포장상태에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그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명확화 (고시 제 3-1 조제 4 항)

□ 과징금 부과절차 간소화

-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과징금 부과에 동의하여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 즉시 과징금 부과 통지서 및 고지서를 교부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행정절차법시행령」 제 14 조 의견 청구 생략 가능 예외규정 반영) (고시 제 6-6 조 제 2 항 단서 신설) 등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 11602 호, 2013. 1. 1. 공포 시행)됨에 따라 체납국세의 세무서장 징수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을 15 일로 통일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된 국세에 대한 세무서장의 징수 요건 등(안 제 1 조의 2 신설).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며 체납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만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불복절차 진행 중 회생계획 인가 중 체납처분유예 중인 경우는 제외하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이관 하게 하는 등 징수 요건 및 절차를 구체화함.

나.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절차 개선(안 제 1 조의 3, 현행 제 1 조)

관세청장이 관세법 해석에 관하여 납세자에게 회신한 사항 중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과 기존 해석에 따른 회신 사항을 제외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본을 송부하도록 하였으나 법령해석 및 집행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에게 회신한 사항은 모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본을 송부하도록 함.

다.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통일(안 제 2 조, 제 127 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승인 후 관세미납 등으로 납세고지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10 일로 하였으나, 수입신고시 및 부과고지시 납부기한, 월별납부 승인 취소시 납부기한 등은 15 일로 규정되어 있어 납부기한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납부기한을 15 일로 연장함.

라. 생산지원 비용 배분에 대한 산출근거(안 제 18 조의 2 신설)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물품의 비율, 해외 및 국내 생산물품 비율 등을 고려하되 실제지급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하게 하는 등 생산지원 비용을 수입물품의 가격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 등을 구체화함.

마.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 명확화(안 제 24 조)

납세자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이나 국제거래시세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조사한 수출국내의 산지 조사 가격과 현저히 다를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보완(안 제 29 조)

관세평가 제 6 방법은 제 1 방법부터 제 5 방법까지를 합리적·신속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나 이를 통해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거 과세가격 등을 고려하는 등 기타 합리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 6 방법을 보완함.

사. 특수관계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등(안 제 31 조의 3 신설)

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원산지 검증 회신을 추가(안 제 34 조제 2 항)

자. 가산세 증과사유 명확화(안 제 39 조제 4 항)

차. 체납자료의 제공요건 및 제공절차 등

(안 제 41 조 신설)

카. 관세환급 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등(안 제 56 조제 1 항 및 제 3 항)

타. 덤핑 등 조사대상물품 선정시 관세청장과의 협의 근거 신설(안 제 60 조제 4 항 신설)

파. 덤핑 등 재심사시 심사요청 철회 허용(안 제 70 조제 11 항 신설)

하. 편익관세 대상국가 중 라오스·바누아투·사모아·러시아 제외(안 제 95 조제 1 항)

거. 관세조사 기간연장시 연장기간 명확화(안 제 139 조의 2 제 2 항)

너. 관세조사 연기여부 통지의무 신설(안 제 140 조제 3 항 신설)

더.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 개선(안 제 199 조제 1 항)

러. 원산지정보 수집 분석업무의 위탁범위 확대(안 제 236 조의 5 제 1 항)

머.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의 통관보류해제를 위한 담보비율 조정(안 제 241 조제 1 항·제 2 항)

버. 탁송품 운송업자 시설에서의 통관허용 기준 등(안 제 258 조의 2 부터 제 258 조의 5 까지 신설)

서.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간이세율 대상품목 추가(안 제 96 조 별표 2)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임 보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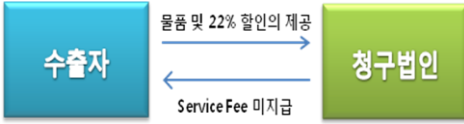
(bhlim@customsservice.co.kr)

관세평가 스터디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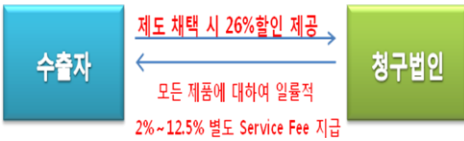
(국심 2003 관 0094)

□ 거래내용 (Service Fee 지급 관계)

(1) 물품 및 서비스의 OO 프로그램 미채택 시



(2) OO 프로그램 채택 시



□ 청구법인의 추가적인 의무부담

① 수입제품의 하자여부 또는 최종사용자에 대한 수리서비스제공 횟수에 관계없이 당해 일정용의 Service Fee 를 일정기간 동안 지급 (청구법인 → 수출자)

② 최종 구매자의 수리 용역 수요와 무관하게 Service Fee 지급 (청구법인 → 수출자)

③ 수출자는 최종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에 대해서는 수리 용역을 제공하지 않음

④ 수출자가 수입국내 현장 출장 시 별도의 출장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본 건 Service Fee 이외에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받음

□ 쟁점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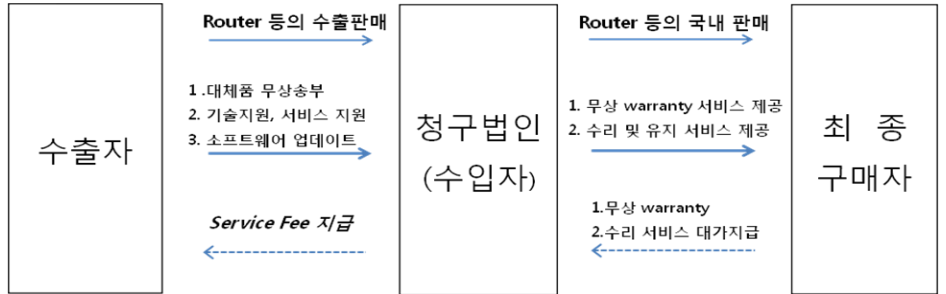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별도 수령한 Service Fee 가 실제 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지 여부

관세법 제 30 조 제 1 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관세법 제 30 조 제 2 항

제 1 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 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 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중략)...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2~4 (생략)
- ▶ 청구법인이 지급한 Service Fee 가 하자 보증비와 유지보수 비용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 것인가?

□ 판결 결론 요약

- 수출자의 OO 프로그램을 채택 하는 경우에만, 청구법인이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Service Fee 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
- 지급하는 Service Fee 는 최종 구매자가 겪는 수리 용역 수요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고, 수입물품의 물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모두 부과되어 있다는 점 (수입가격의 일정률)

☞ 청구법인이 최종구매자에게 수령하는 수리비는 본 건 Service Fee 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③ 수출자가 수입국 내에서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적인 용역비를 수령하고, 최종 구매자의 귀책 사유로 고장인 경우에는 수리 용역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

④ 지급하는 Service Fee 는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지급 되는 추가적 비용이나, 통신산업의 관행에 따라서 청구법인은 사실상 수출자에게 극도로 의존할 수 밖에 없고, Service Fee 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박탈되는 등 Service Fee 는 현실적으로 필수비용이라는 점

☞ Service Fee 는 청구법인이 지급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Service Fee 는 사실상, 하자보수비용에 가깝다.

그러므로 Service Fee 는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이다.

□ 발표자의 의견

- 본 건의 쟁점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Service Fee 가 하자보증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유지에 대한 대가인지 임
- 수입자와 최종소비자 간에 존재하는 무상의 하자보증 / 유상의 유지보수와 관계 없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하자보증에 가깝다는 심판원의 의견에 동의함
- 특히, Service Fee 의 지급과 동시에 발생하는 할인은 제품의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던 하자보증 Service 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겠다는 수출자의 의도로 파악됨
- 설사, Service Fee 의 일부가 유지보수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제하여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지 않을 수 없음.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Shinhan